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69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각 팀의 보안업무”를 “보안업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임직원으로 채용 예정인 자

제16조 중 “말하며 임용권자는 고용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말한다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제1호 중 “문화관광본부장”을 “문화체육시설본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(2024. 7. 9)

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용어정리 및 명확화
- 조직개편에 따른 비밀보관 책임자 직위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제2조(적용범위), 제11조(신원조사), 제16조(용원의 고용 및 관리)의 용어정리
- 조직개편에 따른 제31조(비밀보관 책임자) 직위 변경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70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2024. 7. 9)

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직인의 규격(제4조제1항관련)

직 인 의 구 분	규 격
1.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인	24mm정사각형
2. 회계관계 임·직원의 직인 가. 징수관·재무관·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채무관리관·지출원 및 그 분임자 나.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[물품·세입세출외현금·수입금출납원(체육시설운영팀, 맑은누리편의시설팀,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학가산은천팀, 단호휴양시설관리팀, 계명산휴양관리팀, 주차관리팀, 장사문화공원팀, 교통약자지원팀) 등]	20mm정사각형 18mm정사각형 24mm정사각형 (수입금출납원)
3. 인사위원회의 직인 가. 인사위원회 나. 인사위원장	35정방사각형 23정방사각형
4.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직인	24mm정사각형
5. 공단 이사장의 인감	18mm정 원 형

□ 직인명
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(직인)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징수관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재무관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물품관리관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채권관리관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채무관리관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지출원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수입금출납원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물품출납원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채권채무출납원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(인감)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장인
-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회의장인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
- 이사회 직인 신설

□ 주요내용

- 조직개편에 따른 [별표] 직인의 규격에 부서명 변경
- 이사회 직인 신설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

2024년 7월 9일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371호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정은”을 “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같다”를 “같으며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4. “질병”이란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.

5. “관계 법령”이란,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에 의하여 제정·공포된 시행령, 규칙 등의 규정을 말한다.

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관리감독자는 법 제14조”를 “법 제16조”로 한다.

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: 법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유지하고 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사회 승인)”을 “(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 이사장은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안전관리책임자) 상임이사는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본부별로 지휘·감독을 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안전보건경영위원회) ①사업주는 공단이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안전보건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·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.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
2. 안전·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근로자의 안전·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8.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
9. 근로자의 유해·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

제21조(결정사항)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,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,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안전·보건교육은 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9조”로 한다.

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4조(방호조치) 공단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에 의거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이사장”을 “안전보건관리책임자”로 한다.

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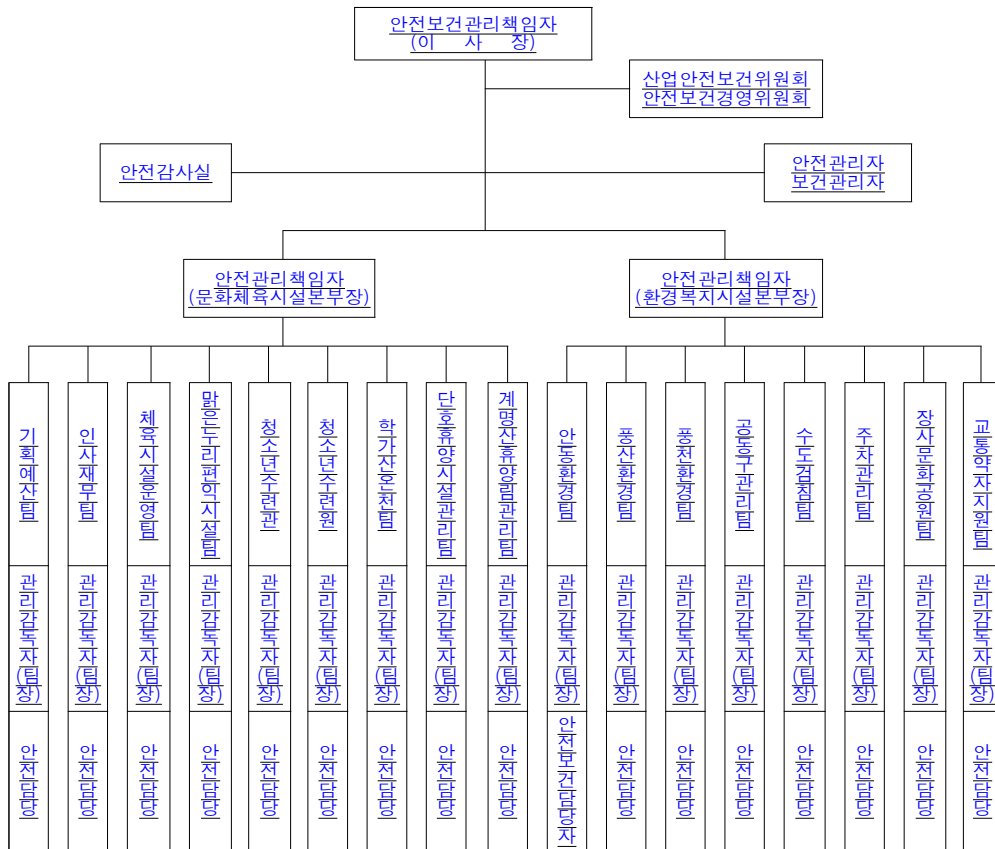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(2024. 7. 9)

이 규정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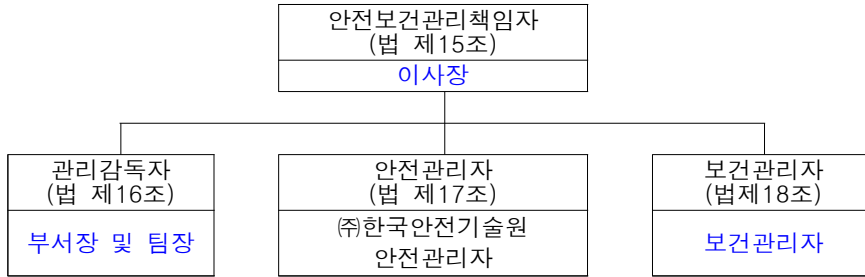
[별 표1]

안전·보건관리 조직표



[별 표2]

산업안전 보건조직 체계(스텝)



-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-

□ 개정이유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개정
-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및 체계의 부서명 변경

□ 주요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용어 정리 및 개정
- 조직개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및 체계의 부서명 변경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상임이사에서 이사장으로 상향